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소 양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는 이를 반드시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

□ 주요내용으로는

제9조제2항 중 “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.”를 “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”로 규정하고

제9조제2항 중 “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.”를 “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”로 규정

제9조제4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”으로, “나머지 비용은”을 “나머지를”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